Crowe Horwath™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년 9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최근 K-IFRS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세무정보

- 추석연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10 월 10 일까지)
-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구매카드 확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웍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최근 K-IFRS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최근 K-IFRS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한국회계기준원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K-IFRS 제정 및 개정 일정

K-IFRS 제개정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시기
'17 하반기 예정	제 1116 호 리스(공개초안)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 하반기 예정	제 1104 호 보험계약(공개초안)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 하반기 예정	제 1040 호 투자부동산 (공개초안)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제 2122 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제 1112 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7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제 1028 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K-IFRS 제 1116 호 리스

(1) K-IFRS 제 1116 호 리스

□ (주요 현황) 2016. 12월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5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116호 '리스' 공표 예정.

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됨.
현행 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운용 리스의 리스료는 기간비용으로 인식.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부채를 인식.

②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과 비슷.

③ 리스 회계기준의 변경 및 구체화 - 리스의 식별기준 구체화, 리스 계약의 구성 요소 분리, 리스기간의 명확화, 리스료의 범위 변경, 리스부채의 재측정 및 리스 변경 회계처리 방법 마련, 판매후리스 기준 변경, 관련 공시규정 강화 등.

④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내)와 소액의 기초자산 리스 - 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가능(선택사항).

⑤ 리스의 식별 -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그 일부).

-(식별되는 자산) 계약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 그 자산을 공급자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효익이 없음.

-(사용통제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사용지시권을 가짐.

⑥ 리스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非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하여야 하나, (실무적 간편법)으로 非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리스요소와 함께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 가능.

⑦ 리스기간=해지불능기간+연장선택권 대상 기간(행사가 상당히 확실)+종료선택권 대상 기간(미행사가 상당히 확실)의 합으로 정의되며,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시에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기간의 재평가가 이뤄짐.

⑧ 리스료=고정리스료+변동리스료(지수/요율 변동)+잔존가치 보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종료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매수나 종료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이를 포함함.

⑨ 사용권자산=리스부채(리스료의 현재가치)+선급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리스개 설 직접원가+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로 구성되며, 리스조건에 따른 추정치임

⑩ 판매후리스

IFRS15 수익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판매 후에도 보유하는 사용권(사용권자산)과 판매로 이전하는 권리(관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를 나누어 회계처리

ⓑ 자산의 공정가치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나 금융으로 회계처리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IFRS15 적용기업은 조기 적용가능하며,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이나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

□ (기준서의 영향 예상) 리스이용자는 부채비율의 증가, 도입 초기 재무제표 작성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정보이용자에게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2) K-IFRS 제 1104 호 보험계약

□ (주요 현황)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9. 2021년 1월 1일 시행) 적용 전 금융상품 기준(IFRS9. 2018년 1월 1일 시행)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개정됨. 2017년 3분기 중 금융위원회 공표 예정

① 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대상 - IFRS4와 IFRS9를 적용하는 기업
방식 -보험활동 관련 자산의 다음 둘의 차이를 OCI로 인식
(IFRS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과 IAS3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기한 -IFRS17의 시행일 전까지

② IFRS9의 적용연기
대상 -IFRS9를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총 부채 중 보험부채가 최소 80% 초과)
방식 -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IAS39를 적용
기한 -2020년 말까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3) K-IFRS 제 1040 호 투자부동산

□ (주요 현황) 2017년 2월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년 4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공표 예정.

① 투자부동산 계정대체(문단 57) 개정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충족여부가 달라지고, 용도변경의 증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문단 57의 (1)~(4)의 상황이 용도변경의 예시임을 명시
『(현행 K-IFRS 제1040호 문단 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 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② 문단 57의 예시규정
(1)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 으로 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4)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4) K-IFRS 제 2122 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 (주요 현황) 2017년 4월 KASB, 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공표.

① 회계논제
외화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 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지가 논점(예-외화를 지급받은 대가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 결론
외화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 자산(예-선급금)이나 비화폐성 부채(예-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적용(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조기적용, 전진적용 허용).

K-IFRS 연차개선 2014-2016

(5) K-IFRS 연차개선 2014-2016

□ (주요 현황) 2017년 4월 KAS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표.

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사실상 소급적용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

②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K-IFRS 제1112호의 요약재무정보 공시를 제외한 다른 공시 규정은 적용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③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법'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단,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현황 및 시사점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현황 및 시사점

2016년 12월 19일에 제정된 스튜어드쉽코드 제도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배당확대 정책이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장법인의 중간(분기)배당의 현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분기) 배당 현황

(1) 중간(분기) 배당 현황

□ (주요 내용)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함.

◦ 도입현황

'17년 6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769개사)의 46.5%(358개사), 코스닥시장(1,230개사)의 46.7%(575개사)가 중간 또는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

'08년말 도입현황과 비교시 유가증권시장은 99개사(38.2%), 코스닥시장은 162개사(39.2%) 증가.

유가증권시장은 중간배당(65%)을 코스닥시장은 분기배당(63%0을 선호.

◦ 실시현황

유가증권시장은 '17년 상반기에만 3조 2,533억원(28개사)을 기록하여 '12년(4,753억원), '16년(9,281억원) 대비 약 6.8배 및 3.5배 증가함.

특히, 금년중 삼성전자의 분기배당 확대(2회, 1조 9,377억원)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41.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코스닥시장은 '17년 상반기 248억원(13개사)을 기록하여 '12년(129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16년(255억원) 대비 97.3% 수준임.

중간(분기) 배당에 대한 주주환원효과 분석

(2) 중간(분기) 배당에 대한 주주환원효과 분석

□ (주주환원효과 분석)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주주환원효과는 긍정적임.

◦ 배당수익율

'16년중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연평균 배당수익율은 결산배당을 실시하는 전체 법인의 배당수익율과 비교하여 1.5~2배 수준임.

유가증권시장은 '16년중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23개 법인의 배당수익율은 3.4%로, 전체 결산배당 실시법인(522개사)의 배당수익율(1.8%)의 2배 수준임.

코스닥시장은 '16년중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18개 법인의 배당수익율은 2.3%로 전체 결산배당 실시법인(502개사)의 배당수익율(1.5%)의 1.5배 수준.

◦ 주가상승률

유가증권시장은 '16년~'17년 상반기중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29개 법인의 평균 주가상승률은(21.2%)은 KOSPI지수 상승율(24.7%)보다 낮았으나, 연 2회 분기배당을 실시한 5개법인(삼성전자, 포스코, 천일고속, 코웨이, 한온시스템)의 평균 주가상승율(47.5%)은 KOSPI지수 상승율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을 기록함.

코스닥시장은 '16년~'17년 상반기중 중간 및 분기배당을 실시한 21개 법인의 평균 주가는 상승(1.8%)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하락(△1.2%)함.

중간(분기) 배당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 중간(분기) 배당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및 시사점)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중간 및 분기배당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간 및 분기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배당이라는 것을 투자자(주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요소로 고려하지 않았고 기업 역시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기업의 가치증대 수단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기에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임.

◦ 국내 상장법인의 중간 및 분기배당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배당제도를 도입한 회사 대비 실시회사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임('12년~'17년 6월말 누적기준 : 유가증권시장 <11.5%, 41개사>, 코스닥<6.3% 36개사>.

◦ 하지만, 스튜어드쉽코드 도입('16년 12월) 등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17년 기중에 일부기업이 분기(중간)배당을 최초*1로 실시하거나, 분기(중간)배당 횟수*2를 늘리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1) 유가증권시장(4개사) : SK이노베이션, 동양고속, 한솔제지, 쌍용양회
코스닥시장(2개사) : 케이젠, 유아이엘

*2) 최근 5년간 연 2회 이상 분기배당 : '12년 2개사(미원상사, SBI모기지), '16년 3개사(포스코, 천일고속, 한온시스템), '17년 상반기 5개사(삼성전자, 포스코, 천일고속, 한온시스템, 코웨이)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추석연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이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됩니다.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

□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 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10월10일까지)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 월 16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2017.12.0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작성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가능.

주요내용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임.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함.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함.
-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구매카드 확대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2. 환급대상(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3.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경유 ℓ당 각각 529원·375원, 부탄 ㎏당 275원

□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4. 경차 카드 확대

□ '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

□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

□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개선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5. 유류구매카드 신청・발급 절차 ('17. 9. 1.부터 시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 공통 첨부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6. 부정 환급 시 불이익

□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중국 투자자의 피투자 내국법인간 대여금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여부

중국 투자자에 의한 피투자 내국법인이 다른 피투자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 3 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4 조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6057, 2017. 6. 12.)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 시 증여의제시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대법 2017 두 32395, 2017. 5. 11.)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